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6호

- 2026년 제8회 -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계획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직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週근무시간)	직무내용
사이버보안 전문 [기획 조정 실 정 보 통 신 과]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시간)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실시 - 시군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행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도시재생 [도시 정책 실 도시 정비 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급	1명	1년 (주35시간)	- 풍덕천동, 구성·마북 현장지원센터 센터장(겸임) -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 연간 사업계획 및 센터 인력 관리,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사업(경기 더드림) 추진 및 관리 - 행정, 주민, 협의체 등 사업시행 주체 의견 조정 - 도시재생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기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수행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주소지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연령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채용분야
18세 이상	2008.12.31. 이전 출생자	○ 사이버보안 전문 ○ 도시재생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격기준
사이버보안 전문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사이버보안 (정보보안)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사이버보안 관련분야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 우대사항 : 사이버보안(정보보안) 분야 자격증 소지자
도시재생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급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도시재생 관련 근무 경력 ○ 관련분야(학력)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재생 분야 등 관련학과

- ※ **경력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은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 비례 계산)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결과 공개** : 본인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별 상·중·하 개수** 공개

4. 채용일정 및 원서접수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8. 31.(월) ~ 9. 10.(목)	'26. 9. 8.(화) ~ 9. 10.(목)	'26. 9. 14.(월) 전·후	'26. 9. 17.(목) 전·후	'26. 9. 22.(화) 전·후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031-6193-2113)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통상환증서 구입시 '받을분' 칸을 공란으로 남겨놓을 것(기재하지 말 것)**
 -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16:30 등)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7회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시청 5층)
 - ※ 용인시청(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① 응시원서 1부(붙임1/필수)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 5급(가급) 이상 : 1만원 / 6~7급(나~다급) : 7천원 / 8~9급(라~마급)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증빙서류 첨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② 이력서 1부(붙임2/필수)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3/필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4/필수)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붙임5/필수)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붙임6/필수)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7/필수)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필수)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증명서 모두 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8)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⑨ 경력(재직)증명서 (붙임9/필수)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붙임9)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⑪ 자격증 사본(필수자격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⑫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
-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6. 보수 및 기타사항

- 근무기간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지속 여부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함.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약정기간	연 봉 액 (하한액 기준)	週당 근무시간
사이버보안 전문	기 획 조 정 실 정 보 통 신 과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50,272천원	40시간
도 시 재 생	도 시 정 책 실 도 시 정 비 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급	1명	1년	50,495천원	35시간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수급자는 반드시 연금 정지 여부 확인(공단에 문의)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 보험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하며, 재공고 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하며,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한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용인시에 임용되는 경우 기지급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관련 규정에 의거 환수될 수 있으니 이점 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 (031-6193-2113)
사이버보안 전문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031-6193-3063)
도시재생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031-6193-2443)

직무 기술서

☐ 사이버보안 전문

임용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임기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지방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1년

주요업무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실시 ○ 시군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행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	---

필요역량	○ 사이버보안 정책 및 보안체계 수립·운영 능력 ○ 사이버위협 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능력 ○ 네트워크, 서버,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및 운영 능력 ○ 유관기관 및 내부 부서와의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	---

필요지식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제도 ○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로그 분석에 관한 지식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기법에 관한 이해 ○ 악성코드, 랜섬웨어, APT 등 최신 사이버위협 동향 ○ 암호기술, 인증체계, 접근통제 등 보안기술 ○ 보안관제장비(ESM, EDR, IDS/IPS 등) 로그 분석 ○ 국가 정보보호 정책 및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지침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u>사이버보안(정보보안)</u>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사이버보안 관련분야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 우대사항 : 사이버보안(정보보안)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직무 기술서

☐ 도시재생

임용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임기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년

주요업무	○ 풍덕천동, 구성·마북 현장지원센터장(겸임) ○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인력 관리,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사업(경기 더드림) 추진 및 관리 ○ 행정, 주민, 협의체 등 사업 시행주체 의견 조정 ○ 도시재생관련 유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기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수행 등 ※ 업무 예시(성과목표치 - 결재건수, 실적)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연5건) / 도시재생사업 주간·월간 업무계획 수립(연5건) - 도시재생사업 연차별·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연3건) /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연5건) 등
------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상황인식·판단력, 업무 기획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 기타 회의자료 등 문서기안 작성 능력
------	---

필요지식	○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 ○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리 업무 등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도시재생 관련 근무 경력 ○ 관련분야(학력)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재생 분야 등 관련학과
--------	---